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26-120호

#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보관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1. 17.

**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**

1. 건　　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2. 근　　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| 성명 | 생년월일 | 주소 | 서류의 명칭 | 서류의 주요내용 | | 송달불능 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처분 사유 |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 |
| 김0솔 | '96.10.19. | 경기도 연천국 전곡읍 전곡역로 48번길 (이하생략) |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|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 불이행 - 출석통지 2회 불출석 및 연락두절 (1차:'26.10.8., 2차:'26.10.15.) |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| 보관기일 경과 |

4. 공고기간: **2026. 11. 17. ~ 2026. 12. 1. (15일간)**
5. 문의사항: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윤미선(☎ 031-828-0875)